

예산총칙

제 1 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 총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기정예산액 | 증감액 |
|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합계 | 4,494,793,577 | 4,307,511,698 | 187,281,879 |
| 일반회계 | 3,872,377,569 | 3,694,495,690 | 177,881,879 |
| 특별회계 | 622,416,008 | 613,016,008 | 9,400,000 |
| 기타특별회계 | 399,010,409 | 389,610,409 | 9,400,000 |
| 농어촌주택사업 | 14,417,810 | 14,017,810 | 400,000 |
| 의료급여기금 | 354,576,599 | 345,576,599 | 9,000,000 |
| 동부권특별회계 | 30,016,000 | 30,016,000 | 0 |
| 공기업특별회계 | 223,405,599 | 223,405,599 | 0 |
| 지역개발기금 | 223,405,599 | 223,405,599 | 0 |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 예산”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“해당 없음”으로 한다.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“계속비사업조서”와 같다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“해당 없음”으로 한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2,938,399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“해당 없음”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